

[ ]육아휴직  
[ ]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**확인서**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<br>본<br>사<br>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소재지:<br>담당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연락처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메일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근로자 성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대상<br>자녀의<br>성명 | 육아휴직<br><br>육아기 근로<br>시간 단축 | ⑦대상 자녀의<br>주민등록번호<br>(출산 예정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육아휴직<br><br>육아기 근로<br>시간 단축 |
|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<br>근로시간 단축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 일           ~ 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<br>따른 근로시간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   주          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   주          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⑩통상임금<br>(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정기준 : 시급, 일급, 주급, 월급, 기타<br>통상임금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<br>(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<br>여지급 내역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고용보험법」 제71조·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사실을 확인합니다.

확인자 사업장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## 작성방법

㉔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.

1. ①,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.

2.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3. ⑥란에는 육아휴직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)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.

4.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가.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: 출산 예정일(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)

나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: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

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

5.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.

6.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.

7.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.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“○” 표시를 하고,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, 주급·일급·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(주급·일급·시급)을 적습니다.

※ 통상임금: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6조와 「통상임금산정지침」(고용노동부예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통상임금산정지침」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<법령정보실-예규>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
8. ⑪란에는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(일급인 경우 일, 주급인 경우 주, 월급인 경우 월 등)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,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

9.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(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)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.

##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

1.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)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 경우,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.

2.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: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 경우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.